

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6.28]

(일부개정) 2023-06-28 조례 제 6942호 (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1-888-314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 3. 28>

제2조(지원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2.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
3.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지원중지)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
 2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
- [본조신설 2018. 3. 28]